● 제328회 ● 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**토 보 고 서** (의안번호: 2336)

2025. 03. 05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

# [이원형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336

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이원형 의원(찬성 20명)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01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02월 06일

#### 2. 제안이유

-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독성물질에 의한 사회적 재난은 발생 시 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장기적으로 피해를 미치고 있으므로 시장 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,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책 무를 부여하고자 함.
- 또한, 중독사고 발생 시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상황 발생 시 기민한 대응이 가 능한 응급의료기관을 관련 센터에 추가하여 독성물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독성물질의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 설(안 제3조제2항)

- 나. 정보 제공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5조제2항제1호)
- 다. 독성물질 사고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 추가(안 제5 조제2항제1호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」,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 : 2025. 02. 11.~ 2025. 02. 15.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 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### 1 개정안의 취지

### 가.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주요 경과

- 2011년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산모들이 치료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, 서울아산병원은 질병관리본부(현 질병관리청)에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의심스럽다며 역학조사 신고를 함1).
- 정부는 2012년 2월 역학조사, 동물실험 등을 거쳐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이라고 밝혔으며,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<sup>2</sup>) 2022년 6월 말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총 7,761명, 그중 사망자는 1,782명임<sup>3</sup>).
-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 판결에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4), 2심은 국가는 "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증하고 관리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집단적 폐손상이라는 피해를 발생시켰다."며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함5).

<sup>1)</sup> 자료: 2019.10.23., "**가습기살균체 '참사 9년' 아직 끝나지 않았다",** 데일리메디뉴스, https://www.dailymedi.com/news/news\_view.php?wr\_id=848756

<sup>2)</sup> 자료: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(2016. 11.), p14.

<sup>3)</sup> 자료: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.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(2022. 9.) 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, p275.

<sup>4)</sup> 자료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15. 선고 2014가합563032 판결 [손해배상(기)]

<sup>5)</sup> 자료: 서울고등법원 2024. 2. 6. 선고 2016나2086563 판결 [손해배상(기)] 2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2심 판결은 최종 확정

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독성물질에 의한 사회적 재난 발생 시, ① 시장이 발생원인 및 수습과정을 중앙정부 등과 공 유하도록 '책무'를 부과하고, ②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에는 피 해구제에 관한 정보 제공 '기능'을 추가하면서, ③ 독성물질 중 독관리센터의 민간 위탁 가능 '범위'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임.

### 2 주요 내용별 검토

- 가. 독성물질 중독사고 발생 시, 시장에게 발생원인 및 수습과정을 중앙정 부 등과 공유하도록 '책무' 부과
- 개정안은 독성물질 중독사고 발생 시, 시장에게 발생원인 및 수 습과정을 중앙정부 등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'책무'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)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시장의 책무) ① (생 략)	제3조 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
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시장은 독성물질 중독사고의
	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
	하여 발생원인 및 수습과정을
	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서울
	특별시교육청, 지역 의료기관
	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
	<u>한다.</u>

- 현행조례 제2조제1항제2호6)에 "독성물질"이란 흡입, 경구,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'모든 화학물질'이라 규정하고 있음.
- 국내 화학물질 중독 사례로는 앞서 언급한 ①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 중독(1994-2011년) 외에도, ② 방수 스프레이 화학물질 중독(2012년)<sup>7)</sup>, ③ 일회용 생리대 화학물질(2017년)<sup>8)</sup>,
   ④ 라돈 침대(2018년)<sup>9)</sup>, ⑤ 세정제 화학물질(2024)<sup>10)</sup> 중독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.
- 위 화학물질과 제품 중 다수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, 이러한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발생원인 및 수습과정 등을 관련기관 등과 적극 공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또한, 현행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4조제1항11)에는 "국가와 지방자기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・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,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・시행"하도록 '책무'를

<sup>6) 「</sup>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」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 2. "독성물질"이라 함은 흡입, 경구,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.

<sup>7)</sup> 자료: 2013.05.27., **"방수스프레이 폐렴 위험… 정부는 '無신경'",** 문화일보, https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13052701071227089002

<sup>8)</sup> 자료: 2023.10.09., **""일회용생리대 화학물질, 생리통 등 위험가능성"…안전관리 착수",** 엽한뉴스,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1006115900530?input=1195m

<sup>9)</sup> 자료: 2024.12.06., ""라돈 논란' 대진침대 손배소 항소심서 소비자 일부 숭소…패소 뒤집혀", 뉴스1, https://www.news1.kr/society/court-prosecution/5623550

<sup>10)</sup> 자료: 2024.09.20., "**"카드뮴 최대 945배…해외직구 제품에 독성물질 범벅,** SBS 뉴스 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\_id=N1007805876&plink=ORI&cooper=NAVER&plink=COPYPASTE&cooper=SBSNEWSEND"

<sup>11) 「</sup>화학물질관리법」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,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부과하고 있고(현행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음),

또, 현행조례는 "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"하기 위해 제정12)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본 개정안을 통해 시장의 '책무'로 명시하려는 내용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.

- 다만, 이러한 독성물질 중독질환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와 함께 실제 독성물질에 노출된 중독환자의 발생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는데, 구체적으로 '자료수집'은 중독환자의 인구학적 특성, 주요 노출 독성물질의 종류, 증상 및 징후, 해독제 사용, 예후 등에 대한 '전국 단위' 자료의 확보와 축적이 필수적임13).
- 이에 2022년 6월부터 '질병관리청'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 신체적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"중독 심층실태조사"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공개<sup>14)</sup>하고 있으므로, 해당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등과 공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<sup>12) 「</sup>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」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의 오남 용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sup>13)</sup> 자료: **질병관리청(2023), 응급실 기반 중독 심충 실태조사 보고서** https://www.kdca.go.kr/contents.es?mid=a20308060300

<sup>14)</sup> 자료: **질병관리청(2023)**, 응급실 기반 중독 심충 실태조사 보고서 https://www.kdca.go.kr/contents.es?mid=a20308060300

### 나.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'기능' 추가

○ 개정안은 우선 현행조례 제4조제1항을 근거로 시장이 21년 8 월부터 설치·운영 중인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(현 수탁기관: 고려대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(안암병원))에게 응급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'피 해구제에 관한 정보'도 제공토록 추가하여 피해자들의 구제를 도우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)	제4조 (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)
① 시장은 시민이 독성물질에	① (현행과 같음)
중독되는 경우 효과적인 치료와	
상담을 위한 중독관리센터(이하	
"센터"라 한다)를 설치 할 수 있	
다.	
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	②
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시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	2
응급의료정보의제공	응급의료정보 및 피해구제에
	<u>관한 정보 제공</u>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
○ '가습기살균제 참사'와 같이 특정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법 이 제정<sup>15</sup>)되고 정부 기구 설치 및 피해자 구제 제도가 마련된

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(이하 "피해구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<sup>15) 「</sup>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」제1조(목적)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7조(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)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

경우라면, 피해자에게 관련 구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으나,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다른 화학물질과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는 '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'가모든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- 특히, 현재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에 '운영조직'을 보면 센터장 (응급의학 전문의) 외 3명(환경보건학 박사, 응급구조사, 의료경영 및 전산 전공)이 상근 중인데, 이들 중에는 변호사나 법학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은 없는 상황임.
- 한편,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에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 제공 '기능'을 추가할 경우 '서울시'와 '고려대 안암병원' 이 수탁사무 범위 조정에 대하여 협의16)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.

<sup>1.</sup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

<sup>2.</sup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・법인・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

<sup>3.</sup> 영상의학, 호흡기내과, 예방의학, 병리학,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

<sup>4.</sup> 환경보건, 독성학, 인문·사회학 또는 <u>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</u> 이상 재직한 사람

<sup>5.</sup>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
<sup>16)</sup> 자료: **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사무 위·수탁 협약서**(2023.12.27.) **제8조(위·수탁사무)** "시"가 "고려대 안암병원"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sup>1.</sup>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 운영

<sup>2.</sup> 중독 상담 콜센터 시스템 구축 운영

<sup>3.</sup>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홈페이지 구축 운영

<sup>4.</sup>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(전화 및 인터넷)

<sup>5.</sup>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

<sup>6.~7. (</sup>생략.)

② 제1항의 위·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"시"와 "고려대 안암병원"이 협의하여 위·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# 다.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민간 위탁 가능 '범위' 추가

개정안은 독성물질 중독상황 발생 시,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독성물질 중독관리 센터의 민간 위탁 가능 '범위'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제 2호)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센터의 운영) ① (생 략)	제5조 (센터의 운영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시장은 센터의 응급의료정보	2
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를 위하	
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	
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	
수 있다. 단, 민간에 위탁하여	l
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	
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	
1. 「의료법」제3조의4에 따른	1. 「의료법」제3조의3에 따른
상급종합병원 또는 이를 운영	종합병원, 같은 법 제3조의4-
하고 있는 의료법인	
2.「의료법」제3조의3에 따른	2.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
<u>종합병원</u>	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
	<u>터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지</u>
	<u>역응급의료센터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위탁 하	3
는 경우 예산의 범위 <u>내</u> 에서 그	<u>아</u>
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	

수 있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- 현행조례 제5조제2항각호에는 시장이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'범위'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'상급 종합병원' 제2호는 '종합병원'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그런데 개정안을 통해 추가하려는 '권역응급의료센터17)와 지역 응급의료센터18)'는 '상급종합병원' 또는 '종합병원' 중에서 지정 되고 있기 때문에, 별도로 '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 터'를 명시하지 않아도 현행규정(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포함됨) 에 따라 위탁할 수 있어, 개정에 따른 실익이 없음.
- 참고로, 현 수탁기관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
   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<sup>19)</sup>되어 있음.
- 한편, 이번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'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' 향후 운영 또는 종료에 대한 서울시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그 사유는, 현재 ①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'25년 상반기 본

<sup>17) 「</sup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26조(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른 <u>상급종합병원 또는</u>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*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* 있다.

<sup>18) 「</sup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30조(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<u>종합병원(이하 "종합병원"이라 한다)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</u>있다.

<sup>19)</sup> 자료: **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. '**2025년 1월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(응급의료시설) 현황' https://www.e-gen.or.kr/egen/notice\_view.do?brdctsno=12881&upperfixyn=N

센터 운영이 종료<sup>20)</sup>된다고 밝히고 있고, ② 서울시 역시 센터 사업 운영 평가(~'25년 3월) 후 25년 6월 민간위탁을 종료하겠다는 계획<sup>21)</sup>이므로, 이러한 현시점에서 해당 센터의 '기능'과 위탁 가능 '범위'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.

#### ※ 집행기관 의견(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)

○ 소관부서는 센터의 기능에 "피해구제에 관한 정보 제공" 추가와 관련하여 타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'수정 가결' 의견을 제 출함(안 제4조제2항제2호는 부동의).

### 3 종합의견

-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독성물질 중독상황 발생 시, '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'에 응급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'피해구제에 관한 정 보'도 제공토록 추가하여 피해자들의 구제를 도우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.
- 다만, 이 조례를 근거로 시장이 설치·운영 중인 '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'는 25년 상반기 운영이 종료될 예정임. 이처럼 종료를

<sup>20)</sup> 자료: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`24년 성과지표 중 성과 미도달 사유 및 향후 운영방향.
(센터 운영 중단) `25년 상반기 본 센터 운영이 종료되어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상기 사업 진행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, 종료하기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예방교육 정보 뉴스 게시 등을 통해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음.

<sup>21)</sup> 자료: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. p172. (202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)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향후계획 : 센터 사업 운영 평가(~ '25년 3월) 후 민간위탁 종료(' 25년 6월)

앞둔 현시점에서 해당 센터의 '기능'과 위탁 가능 '범위'를 확대 하는 내용에 개정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.

> 문 의 처 우현재 입법조사관 (02-2180-8155)